

근로자 종합건강증진운동 (Total Health Promotion)

편집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 오늘날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단순한 관점으로부터 새롭게 한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심신양면의 건강유지증진을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위에 사업주가 함께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이 서서히 전파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코자 하는 THP(Total Health Promotion, 종합건강증진운동)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의 사업장에도 이를 보급해 나가고자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시점에 와있다.

〈THP란〉

1. 배경과 취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급속한 기술혁신, 산업발전 등은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일으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고령화에 따르는 운동기능, 감각기능, 평형기능등의 저하는 전도, 추락, 전락 등 산업재해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질환 등 고령근로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은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양태에 따라 건강상의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 또한 새로운 산업공학적기기와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변화된 사업장에서 적응하기 힘든 스트레스성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며, 이러한 질병은 근로자 자신의 정신적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자 모두가 심신양면에 걸쳐 건강할수 있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보면 WHO는 1986년에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오타와에서 개최했다. 오타와회의에서는 「건강은 사회, 경제 및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 되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1987년에는 「근로현장에 있어서의 건강증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8년 건강증진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2. 목적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는 근로자 자신의 힘만으로는 대처할수 없는 건강장해 요인, 스트레스 요인 등이 있다. 이런곳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 위에 사업주가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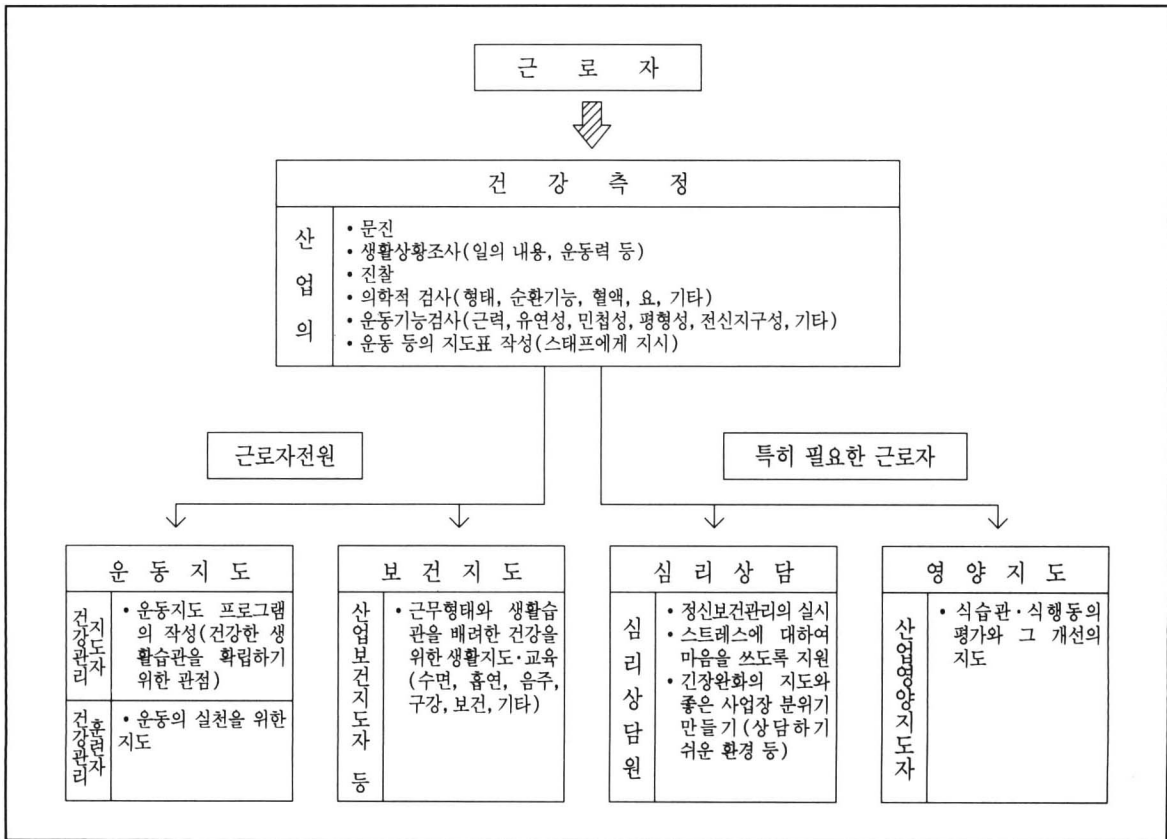
이러한 건강관리는 오늘날까지 해오던 건강장해를 방지한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한걸음 더 나아가 근로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심신양면에 걸쳐 적극적으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지표로 삼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P계획의 구체적 내용>

지금까지의 건강진단은 건강장해와 질병의 유무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앞으로의 건강측정은 질병유무의 확인에만 머물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대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마다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람마다의 건강상태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질높은 근로생활을 영위해 갈수 있도록 지도와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THP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사업자가 행할 건강의 유지증진 활동도)



1. 건강측정의 내용

건강측정항목은 ① 문진, ② 진찰, ③ 의학적 검사, ④ 생활상황조사, ⑤ 운동기능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2. 건강측정실시결과에 의한 각종지도

건강측정은 원칙적으로 산업의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며, 실시결과를 토대로 각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맞도록 지도표를 작성하여 그 지도표에 의한 ① 운동지도, ② 정신보건관리, ③ 영양지도, ④ 보건지도를 수행한다.

3. 건강유지증진사업

건강유지증진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중양노동재해방지협회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건강측정의 연수, 건강관리훈련자, 심리상담원, 산업영양지도자, 산업보건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여 스태프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태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장등이 이용할수 있도록 외부 건강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서비스기관」과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지도기관」을 육성하고 있다.

1) 기업내 건강유지증진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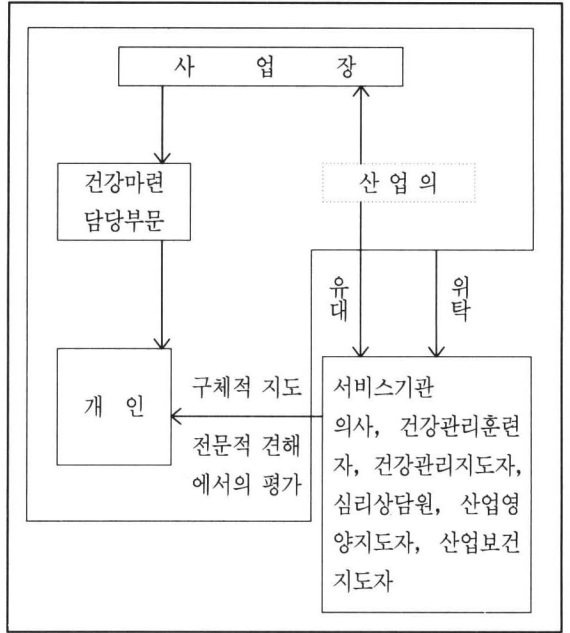
(가) 계획의 책정

기업내 건강유지증진사업은 건강측정, 운동지도 등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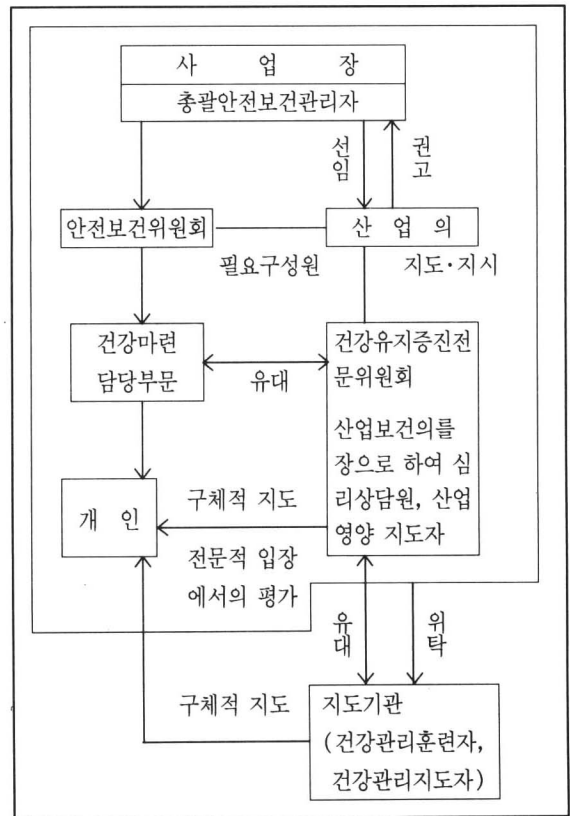
건강유지증진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장내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체제정비에 관한 일
-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측정, 운동지도, 정신보건관리, 영양지도, 보건지도 등 실시에 관한 일
- ③ 건강유지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

〈건강유지증진 서비스기관의 지원형태〉



〈건강유지증진의 지도기관 지원형태〉



한 인력의 확보 및 시설, 설비의 정비에 관한 일

④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일

(나) 체제의 운영

사업장에 있어서의 보건관리체제와 건강유지증진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의 <건강유지증진조치의 위치마련도>를 참고하여 운영할수 있다.

2)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서비스기관

사업장 단독으로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건강유지증진계획의 책정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또 사업계획을 책정하였어도 건강측정 및 건강지도를 담당할 스태프와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하기 곤란할 때가 있다.

이럴 때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원을

받아 건강유지증진 사업을 실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건강유지증진 서비스기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내에 건강유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스태프가 없을 때에는 의사, 건강관리훈련자, 건강관리지도자, 심리상담원, 산업영양지도자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자가 갖추어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측정, 운동지도, 정신보건관리, 영양지도 및 보건지도를 실시할수 있다.

(나) 건강유지증진 지도기관

사업장에서 건강유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스태프 가운데 단지 체력운동지도를 수행해야 할 스태프만이 부족한 경우 그 사업장에 속한 산업의와 유대를 이어가면서 운동지도를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수 있다. ♣

<사업장에 있어서의 건강유지증진 조치의 위치마련도>

